

의안번호	2202173
의 퇴 인	이병진 의원
회 답 일	2024. 7. 9.
추계번호	24F136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15%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5,8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(2024년 12월 31일)을 고려 시, 공제율 상향은 2024년 투자분에 한해 적용되어 2025년만 세수효과가 발생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5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(제24조 제1항 제2호) ¹⁾	-5,852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 제1항 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- (현행) 대 15%, 중견 15%, 중소 30% - (개정안) 대 30%, 중견 30%, 중소 45%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4조 제1항 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2024년 중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, 부칙에 따라 2024년 투자분에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이 적용
 -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(2024년 말)을 감안 시, 세수 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5년 한 해만 발생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¹⁾ 상 2023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잠정실적을 바탕으로, 향후 세액공제액이 산업은행의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 상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앞서 전망한 공제액 전망치를 기준으로 현행과 개정안의 세액공제율 차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른 공제액 증가 효과를 산출
 -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기업의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1) 기획재정부, '국무위원후보자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)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', 2023. 12.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 개요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음

-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‘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 수단, 바이오의약품’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4%)를 적용함

[표 2]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

□ (공제실적) 2023년 잠정실적 기준,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은 7,500억원 수준

-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7,483억원, 중견기업 9억원, 중소기업 8억원 수준

[표 3]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실적: 2023년(잠정치)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	8	9	7,483	7,500

자료: 기획재정부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5%p 상향하는 내용

- (현행) 대기업 15%, 중견기업 15%, 중소기업 25%
- (개정안) 대기업 3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40%

(2) 추계방법

-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및 NABO의 명목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공제액을 전망
-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 상 2023~2024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
 -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(잠정): 대 - 5.3%, 중견기업 9.8%, 중소기업 5.8%
 -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(전망): 대 3.0%, 중견기업 4.3%, 중소기업 6.5%

[표 4]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
중소기업	8	8	9
중견기업	9	10	10
대기업	7,483	7,086	7,299
계	7,500	7,105	7,318

자료: 한국산업은행,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현행과 개정안의 세액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5%p 상향
 - 현행 공제율(%): 대 15, 중견 15, 중소 25
 - 개정안 공제율(%): 대 30, 중견 30, 중소 40

[표 5]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안에 따른 공제액 변화: 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5			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현행 세액공제율 기준 (A)	9	10	7,299	7,318
개정안 세액공제율 기준 (B)	14	21	14,598	14,633
차이 (A-B)	5	10	7,299	7,3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비 15%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5,85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(2024년 12월 31일)을 고려 시, 공제율 상향은 2024년 투자분에 한해 적용되어 2025년만 세수효과가 발생
 -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경우 법인세는 7,315억원 감소하나, 농어촌특별세 과세(1,463억원)를 고려한 세수효과는 -5,852억원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5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(제24조 제1항 제2호) ¹⁾	-5,852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